

『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사용 범위 확대(안 제5조)

- 재난·재해관련 장비의 임차 및 자재의 구입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에 대한 보수·보강 등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맞추어 일부조항 정비(안 제5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·보수 사업

나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또는 임차

다.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

라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

마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
바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

사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

아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

자. 재난·재해관련 장비·자재의 구입 및 임차

차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2.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1.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·수문·배수관·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·보수 사업	1.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2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)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·보수 사업	가.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·보수 사업
3.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, 보, 용수로·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·보수 사업	나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또는 임차
4.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·보수 사업	다.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
5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, 임차	라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
6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	마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7.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	바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
8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	사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
9.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·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	아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
10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	자. 재난·재해관련 장비·자재의 구입 및 임차
	차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현행	개정안
<u>1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</u> <u>1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</u> <u>1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</u> <u>14. 재난관련 장비구입</u> <u>15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</u> <u>1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</u> <u>17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</u>	<u>2.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</u>